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6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써, 2023년 기준 정원 1,022명 중 현원 976명(1인당 12.7개교 담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 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③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④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⑤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¹⁾.

<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예방	사안대응	사후관리	위기청소년 보호
* 학생·교사 면담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경·학 협력	* 117 등 신고사건 처리 * 폭력서클 정보수집·해체 등	* 추가피해 방지 및 보호·지원 연계 * 가해학생 선도 등	*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견 및 지원 연계 등

자료: 유스폴넷(Youth Pol-net)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이래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감소하고, 소년법 검거인원이 감소하는 등²⁾ 학교폭력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학교-경찰간 가교로서 교육현장에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³⁾,

교육부는 향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의 지원·협력(정보공유, 사안조사 자문 등),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무위촉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⁴⁾⁵⁾.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2) 학교폭력 검거인원 : '12년 23,877명 → '21년 11,945명(49.9% 감소)

소년법 검거인원 : '12년 107,018명 → '21년 54,138명(49.4% 감소)

3) 한국교총 주관 교사 대상 조사('16. 670명 대상)에서 80.7%가 SPO 제도를 유지,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2.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졌으며,

법령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⁶⁾할 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지 못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⁷⁾를 제외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선 학교와 소관 경찰관서와의 상호

4)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23.12.7.

5) 붙임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참조.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긴급구조 및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과거에는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더 많은 문제가 법적 절차나 사법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는 “학교의 사법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학교의 사법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화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의 공유 항목 및 범위,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이 필요 없는 사안마저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으려는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학교와 경찰서 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구체적

범죄 혐의 인지 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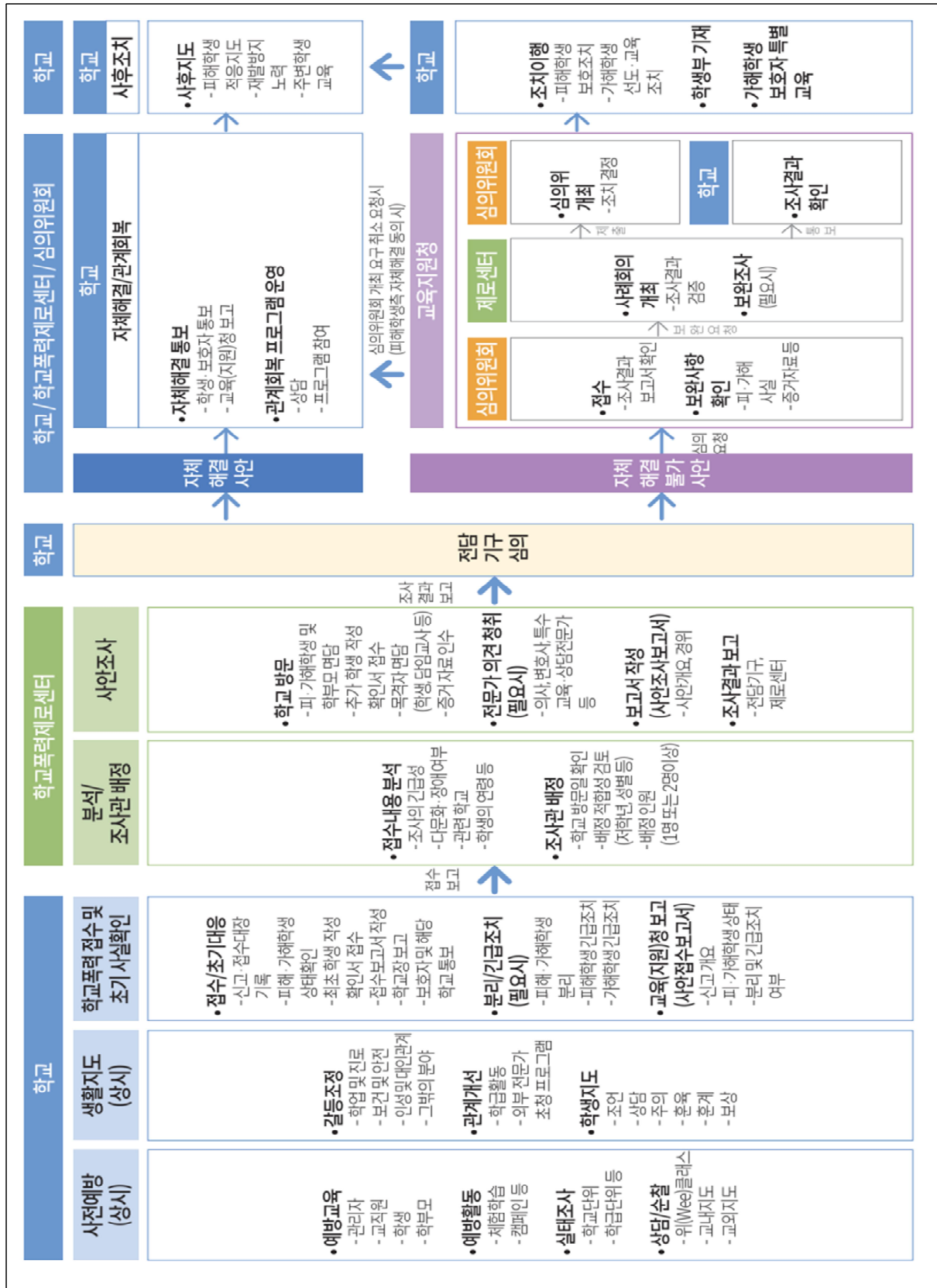
또한, 강원, 세종, 인천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여부의 확인은 사안 조사 이후 전담기구에서 사안 내용과 피해자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이 가능하며, 사안 발생시마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입이 불필요한 사안마저 통보하게 되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민감한 사안의 내용과 학생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민원 발생소지가 크며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고 체계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자료: 교육부